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752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이종배·강승규·김성원

정동만 · 김재섭 · 서천호

엄태영 · 김위상 · 김기현

김승수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파급력이 보다 크고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2023년 서울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게시물이 다수 게시되어 사회적 불안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경찰 인력의 반복적인 투입 등 공적 자원이 과도하게 소모되었음. 특히 모방 범죄 예고로 검거된 피의자 중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낮은 경각심에서 비롯된 단순한 장난이나 호기심이 공 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줌.

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을 협박하는 경우 그 특성을 고려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관련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0조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44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11(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① 이용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0조의3(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신 설></u>	제44조의11(정보통신망을 통한
	공중협박) ① 이용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
	에 위해를 가하는 등 공중을
	협박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
	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u>된다.</u>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u>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u>
	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
	<u>야 한다.</u>
<u><신 설></u>	제70조의3(벌칙)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
	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u>한다.</u>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